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, 질병관리청



## 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대한의사협회 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신고 및 집계기준 관련 안내

- 1.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11조(의사 등의 신고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보건소장 등의 보고)에 따라 **주치의(검안의)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** 사망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(24시간이내) 신고를 요청드립니다.
  - \*신고방법 : "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" 입력(불가 시 관할 보건소 신고)
- 3. 또한 <u>격리해제 후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신고 가능</u>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.
  - (코로나19 사망자 집계 기준)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체 사인(외인사 등)이 없는 경우이면서,
    - 1)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한 경우
    - 또는 2) **사망 후 코로나19 감염을 확인**한 경우 포함
    - 또는 3) 코로나19 감염 후 **격리해제된 이후의 사망은 의료진의 소견**(코로나19 연관 사망여부)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확인 후 신고 집계, 끝,

저장: 이현주/중앙방역대책본부 (2022-04-05 10:28:32)

## 중앙방역대책본부장

역학조사관 **보**건연구관 **김성순** 정보분석팀장 **권동혁** 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12364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코로나19예방접 / http://www.kdca.go.kr 종대응추진단

전화번호 043-719-7744 팩스번호 043-719-7744 / dain20@korea.kr / 비공개(5,6)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

문서관리카드중앙방역대책본부-12364 2-2